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09.05.18, 2011.05.30, 2011.11.16, 2012.07.09, 2012.09.03, 2013.09.23, 2014.10.01, 2015.04.30,
2015.06.15, 2015.08.27, 2015.11.02, 2016.03.02, 2016.04.01, 2016.07.01, 2016.08.01, 20170123 20180430
20180903, 20190107, 20190201, 20190502 20191101 20210203 20210304 20210331 20210413

종합 대출 설명서

1. 종합대출설명서 개요

본 설명서는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종합대출 약관에서 정한
예탁증권담보용자(주식담보, 채권/파생결합증권담보, 집합투자증권담보)와 주식매도
자금대출에 대해 회사가 별도 정하는 내용과 대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내용
주식담보용자	위탁 계좌에 예탁된 상장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
채권/파생결합증권 담보용자	고객 위탁 계좌에 예탁된 상장 채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
집합투자증권담보용자	집합투자증권(펀드)를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
주식매도담보대출	매도된 예탁 증권을 담보로 매도결제일 전까지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

2. 대출 약정

종류	가능 고객	대상 계좌
주식담보용자	내국인 실명 개인 내국 법인	위탁계좌
채권/파생결합증권 담보용자	내국인 실명 개인 내국 법인	위탁계좌
집합투자증권담보용자	내국인 실명 개인 내국 법인	집합투자증권 계좌
주식매도담보대출	내국인 실명 개인 내국 법인	위탁계좌

- 1) 내국인 실명 개인, 내국 법인에 한하며, 당사 내 1인 다수 계좌에 대해 약정이 가능합니다.
- 2) 계좌의 소속 영업점 또는 인터넷, HTS를 통해 고객이 직접 대출약정을 할 수 있고, 대출약정은 고객의 해지 전까지 유효합니다.
 - 가. 영업점을 통한 약정의 경우
 - 개인계좌는 본인이 직접 약정을 해야 하며(미성년자 약정 불가), 대출 약정신청서, 실명확인증표와 거래인감이 필요합니다.
 - 법인계좌는 대출약정신청서(거래인감을 찍음),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 영업점에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인터넷 또는 HTS를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 온라인(인터넷, HTS)을 통한 약정의 경우
 - 고객이 직접 약정을 신청하면, 당사에서 신용정보 조회 후 유선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약정을 승인합니다.
 -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한 경우에도 영업점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3) 부실거래자와 채무불이행자는 대출약정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4) 대출 약정 시 고객이 대출 최고 한도를 정하며 대출 약정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심의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5) 대출 약정금액 구간(표3)에 따른 수입인지대금을 회사와 고객은 50:50의 비율로 부담하며, 대출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 회사는 인지세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대출 신청

종류	대출 가능 금액	대출 기간
주식담보용자	대출 대상 주식 전일 증가 50% ~70% - 일반형 : A군: 65%, B군:60%, C군:55%, D군,E군:50% ※ 대출가능 한 해외주식 종목 : C군 적용 - 매매형 : 70%	90일
채권/파생결합증권 담보용자	• 채권 : 국공채 및 신용평가등급 AAA채권은 대출 대상 상장채권의 전일증가와 시가평가 가격 중 작은 가격을 기준으로 70%, 국공채 및 신용평가등급 AAA채권 이외의 경우 60% • ELS : 대출대상 파생결합증권(ELS)의 환매 예상금액의 70% , 원금비보장형은 대출불가	90일
집합투자증권담보용자	대출 대상 집합투자증권 평가금액의 공사채형	90일

	(MMF포함) 70%, 채권혼합형 65%, 주식혼합형/ 주식형 60%, 주가연계펀드 50%	
주식매도담보대출	매도대금(수수료/세금 제외)의 98%	매도결제일 까지

※ 매매형 주식담보용자

- 국내주식 담보대출 외, 채권/파생결합증권/집합투자증권/해외주식 담보대출 및 신용융자 잔고 보유 계좌는 매매형 담보대출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며, 국내주식 담보대출 보유 시 담보비율 150% 이상인 경우만 매매형 담보대출 서비스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매매형 담보대출계좌의 출금가능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70%입니다.
 - 매매형 담보대출 종목의 경우 만기연장은 원 담보비율이 140%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매매형 대출 시 담보징구 순서는 ‘A군 → B군 → C군 → D군 → E군’ 순이며, 종목군이 동일할 경우에는 종목코드 빠른 순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 1) 고객은 대출 대상 계좌 소속 영업점 (방문, 전화) 또는 회사 온라인거래서비스 (홈페이지, HTS)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약정시 정한 대출 최고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 대출 금리
- 대출금리는 보유 기간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 자산 및 수익 기여도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는 정기이자의 경우 매월 첫 영업일에 후취하며, 중도 상환의 경우 상환시에 징수합니다.
 - 이자를 1개월이상 연체시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연체 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고객에게 적용되는 만기내 보유 기간별 이자율 중 최고금리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P)을 합산하여 최대 연11%에서 결정됩니다.)
 - 전월 미납분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해서 발생한 대출이자 미납연체료는 대출원금 x (연체율 - 대출이자율) x 일수 / 365(윤년의 경우 366)로 징수합니다. (“예수금 ≥ 이자미납 + 연체료” 일 경우에만 변제처리)
- 3) 대출의 제한
- 가. 대출 불가 계좌
- 미수금, 이자미납 및 기타 미납 내역, 미수유가증권 발생 계좌
 - 예수금보다 위탁증거금이 큰 계좌

- 담보비율이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만인 계좌
- 질권 설정 또는 기타 사고 등록 계좌
- 휴대폰 미등록 고객

나. 대출 불가 금융투자상품

- 주식 : 당사 증거금률 100% 종목, 관리, 감리, 투자유의 종목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일부 종목
- 채권 : 2개 이상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이 BBB 미만인 회사채 (BBB 인 경우는 회사 심사 후 대출 가능하며, CB 및 BW의 경우 대출 시 담보 받는 수량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됨)
- 파생결합증권 : 원금비보장형 ELS 및 DLS
- 집합투자증권 :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금지된 집합투자증권, 목표달 성율 지정 펀드, 일부인출이 되지 않는 펀드의 같은 계좌 내 추가 대출

4. 대출금의 상환 및 연장

종류	상환 방법
주식담보용자	현금상환, 매도상환
채권/파생결합증권 담보용자	현금상환, 매도상환, 자동상환
집합투자증권담보용자	현금상환, 매도상환
주식매도담보대출	자동상환

- 1) 현금 상환 : 대출 만기일 이전에 일부 또는 전액 현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 가능 금액은 대출 계좌 출금 가능 예수금에 한하며, 집합투자증권담보 용자의 경우 약정시 지정한 계좌의 출금 가능 예수금으로 상환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감자, 합병, 분할, ISIN변경 TICKER코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현금상환이 제한 됩니다.
- 2) 매도 상환 : 담보 주식/채권 매도대금, 파생결합증권의 중도상환 대금 또는 집합투자증권 환매 대금으로 대출금 및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 다.
- 3) 자동 상환 : 담보 파생결합증권의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발생 시 자동으로 대출금 및 대출 이자가 상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 4) 만기 통보 및 연장 : 회사는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일 7영업일 전에 만기 상 환을 통보하며, 고객은 종목군 한도 이내에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투자성향 및 신용상태, 담보예탁증권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만 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연장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5) 미상환대출금 발생계좌 임의상환 정리
가. 예탁증권 담보대출금이 상환기일(만기일)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다음 영업일 시가단일가 매매(해외주식은 해당 해외시장의 정규장 시작 직후)시간에 해당 담보증권을 자동 반대매매(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환매 청구)를 통하여 임의상환 정리 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전일 종가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이 산정됩니다
- 다. 임의상환 처분 순서는 “자동 현금상환 → 미상환대출금 종목” 순이며, 미상환대출금 종목 전량 결제 후 상환금액일 부족한 경우, 현금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5. 담보의 관리

1) 담보평가방법

- 금융투자업규정 4-2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가. 주식 : 당일종가를 기본으로 하되 아래 해당종목은 평가방법을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용용자, 주식담보대출, 현금주식
거래정지종목	거래소 대응가 '0' 인 종목 → '0' 으로 평가 거래소 대응가가 '0' 이 아닌경우 →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의 순으로 평가
관리/정리매매	'0' 으로 평가 (거래소 대응가 없음)
투자위험/경고종목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 순으로 평가 ※ 투자위험/경고종목은 거래소 대응가 '0' 이어도 담보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 [참고] 거래소 대응가가 '0' 인 경우

- 관리종목/정리매매종목
- 자진 상장폐지신청으로 거래정지가 된 종목
- 투자위험/경고종목
- 상장폐지실질심사(거래소, 코스닥 실질심사규정) 대상(예상) 종목으로 거래정지된 종목
- 기타 거래소가 대응가를 '0' 으로 정하는 경우

2) 담보유지비율 및 상환일

종류	담보유지비율	상환정리일
주식담보용자	140% - 해외주식 담보용자 보유 시 : 170%	D+1일(130%미만인 경우) D+2일(130%이상인 경우)
채권/파생결합증권	- 매매형 담보용자 이용 시 : 150%	D+2일

담보용자		
집합투자증권 담보용자	140% ※ 담보유지비율 별도 적용 펀드 (영업점 확인요망) - 추가연계펀드(기초자산별) - 레버리지펀드(레버리지 비율별) -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과 환매대금 지급 일이 특정 기준일을 초과하는 펀드 등	D+2일
주식매도담보대출	-	결제일

D : 담보부족발생일

1) 담보 비율의 산정

가. 주식(해외상장주식 포함)담보용자, 채권/파생결합증권 담보용자

- 실질잔고(D+2일 예상잔고)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계좌 내의 타 신용 공여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해외주식 대출잔고를 보유한 계좌에 한해, 보유중인 외화예수금과 대출가능 한 해외주식을 원화로 환산한 평가금액이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담보비율은 매 영업일 16시 10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집합투자증권담보용자

- 계좌 내 대출잔고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모두 합산하여 매 영업일 1회 평가합니다.

2) 회사의 종합대출(신용 공여 포함)의 담보유지비율은 140% 이며, 해외주식 대출잔고 보유 시에는 담보유지비율을 170%로 상향하여 적용하며, 매매형 담보대출 이용 시에는 담보유지비율을 150%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의한 경우 140% 이상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담보를 평가 함에 있어 유상, 무상, 청약, 합병, 회사분할 등의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당해 권리도 담보로 인정 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 중 회사가 선정한 대출가능 한 종목에 한해 담보로 인정합니다.

4) 고객은 담보비율 미달 시 회사가 전화 등을 통해 요구하는 추가 담보를 요구일 포함 1일(휴장일 제외) 이내에 제공해야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영업일(휴장일 제외) 이내 제공하여야 합니다.

5) 담보부족 발생계좌 임의 상환정리

가. 회사가 요구하는 담보의 추가납입요구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채무상환 요구일까지 채무를 상환

하지 않을 때에는 반대매매(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환매 청구)를 통해 임의 상환 정리를 할 수 있으며, 담보유지비율이 130%이상인 경우 추가 담보요구일 포함 2영업일 경과 후 전일종가대비 하한가로 수량이 산정되고 담보유지비율이 130%미만인 경우 전일종가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이 산정됩니다.

- 나. 해외주식 종목은 담보유지비율 130% 여부와 상관없이 전일종가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임의상환 수량이 산정 됩니다.
- 다. 반대매매 실행 후 담보유지비율이 충족되지 아닐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보없이 다음영업일에 연속으로 임의상환이 실행되며, 이 경우 하한가로 임의상환 수량이 산정됩니다.
- 라. 임의상환 처분순서는 ‘자동현금상환 → 신용융자주식 → 신용대주주식 → 국내주식 담보대출 → 해외주식 담보대출 → 채권 담보대출 → ELS 담보대출’ 순이며, 신용공여 유형 내에서는 ‘대출일자 빠른 순 → 종목 코드 빠른 순’ 으로 반대매매 합니다.
- 마. 임의상환 처분순서 변경은 처분일 오전 8시 50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병, 감자 등의 제권리가 발생되거나 담보교체가 있는 경우, 요청한 종목으로 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외주식 종목은 처분순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표1] 대출 약정 및 금리

구분	주식담보 파생결합증권 담보	채권담보	집합투자 증권 담보	주식매도 담보	
대출 대상	개인/법인	개인/법인	개인/법인	개인/법인	
약정 한도	20억원			20억원	
대출 이자 (연 %)	*보유기간별 체차 적용			8.5%	
	대출 기간	적용금리	기준금리 (CD91일물)		가산금리
	1~30일	6.8%	0.75%		6.05%
	31~90일	7.4%	0.75%		6.65%
	91일 이상	8.5%	0.75%	7.75%	

※ 연금저축계좌내 집합투자증권대출 : 3.2%

[표2] 신용공여 종목군 한도

구분	대출 한도
A군	20억원
B군	10억원
C군	5억원
D군	2억원
E군	1억원

※ 종목군은 당사가 개별 주식의 위험도 등을 정기(6개월마다 변경) 또는 수시 평가하여 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목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용공여 한도 및 적용 금리는 매입/대출 시 한도와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만기 연장 시에는 변경된 종목군에 따라 새로운 신용공여 한도와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주식은 미국 내 3대 증권거래소인 AMEX, NYSE, NASDAQ 상장주식 중 시가 총액과 시장거래대금 순위를 동일 비중으로 합하여 상위 300개 종목을 대출가능 종목으로 선정합니다. 해당 선정 종목 중 순위가 하락하여 상위 300개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출불가종목으로 변경되며, 이로 인해 담보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매형 담보대출 서비스 신청 시, 계좌에 보유중인 종목 현황에 따라 신용공여 불가 종목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경우 1억원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표3] 인지세표

대출금액	인지세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6. 청약의 철회

- 회사는 고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 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 37 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금소법제 23 조예제 1 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금소법제 23 조예제 1 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2)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 37 조제 2 항의 방법)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3)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된 이자율을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7. 위법 계약의 해지

- 고객은 금소법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 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적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종합대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화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